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022. 3. 21.~3. 24. / 4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의결

강릉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3월 21일 신재걸 부의장의 주재로 개최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최익순 의원의 ‘강릉시 구 도심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방향’에 관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김복자 의원의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일반제)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강희문 의장은 “연일 사상 최대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계속되는 경기침체, 유가 급등까지 민생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은 만큼 애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과 지난해 가을부터 장기화한 가뭄으로 봄철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월 초 성산과 옥계 산불로 상심하고 있는 이재민과 피해를 본 동해시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도 덧붙였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지역의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강릉국제영화제 발전 방향’과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보고



강릉국제영화제 정체성·전문성 강화 등 주문

사격장 인근 주민과의 상생계획도 강조

강릉시의회는 지난 3월 21일 강릉시 문화예술과의 ‘강릉국제영화제 발전 방향’과 특구개발과의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릉국제영화제 발전 방향’ 보고에서는 강릉국제영화제의 문제점으로 ▲제3회 영화제로서 낮은 인지도와 ▲프로그램 대중성 부족 ▲관광 참여형 프로그램 부족 등을 진단하고,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 강화 ▲정체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연계 및 시민 참여 ▲집행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전략과제로 도출했다.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국가철도망 연결개선과 맞물려 금진·심곡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복합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이다. ▲올해까지 국방부의 사업계획승인과 사격장 이전부지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3년 사격장 이전사업 착공 ▲2026년 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사격장 인근 주민과의 상생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동안 민간투자 유치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워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위원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병관 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 방역수칙과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2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 가결

행정위원회



안전처리현황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 ‘강릉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위원회의 기능인 자문·심의·의결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지적
-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가로수 열매채취 허용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당부
-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수목원 확장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계획 필요 강조
-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원안 가결

산업위원회



안전처리현황 (조례안 1건)

- '강릉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보류
 - 현행 대비, 조례 제정의 장단점 분석 필요
 - 렌터카의 수요공급 비중, 이용료, 편의성 등 이용자 기준의 사전 조사 필요
 -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차고지, 의무위반 등 부작용에 관한 검토 필요

의정활동 이모저모

강릉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의회 100만 원



철원군의회 100만 원



고성군의회 100만 원



인터넷카페 '시아머니와 며느리' 1,500만 원

강릉시 구 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방향에 대하여



최익순 의원

2006년 강릉시는 하수관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합류식이 37%, 분류식이 63%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릉시 구도심의 경우 분류식 비율이 다른 읍·면·동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는 정화조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따로 처리되지 않은 채 오수와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흘러나가 부패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분류식 하수관거는 오수나 빗물이 섞이지 않고 각각의 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등 시설에서 생기는 오수는 직통 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분류식 하수관거는 악취 저감, 우천 시 오·우수를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도심의 경우 밀집된 가옥과 협소한 이면도로, 이미 부설된 상수도관·합류관로 등 다수의 지장물로 인해 신설 관로 부설이 난해하다는 이유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산권 행사 시에도 정화조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어 가로환경 개선사업,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사업 등으로 강릉 구도심의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구도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포 샌드파인 퍼블릭(일반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복자 의원

퍼블릭(일반제)골프장의 원래 준공 마감일은 2010년 12월 31일이었으나 강릉시는 다섯 차례나 준공 마감일을 연장하였으며, 현재 2023년 12월 말일로 최종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주)승산이 퍼블릭(일반제)골프장 6홀 예정부지를 제삼자에게 몰래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승산은 9홀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인근 사유지 21만 271㎡를 협의 매수하고 2004년 10월 사업부지 내 미매입 토지 18필지 3만 6,528㎡에 대해 토지수용재결을 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주)승산은 토지주들에게 환매 사유 발생에 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자인 강릉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개발 이익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민 의원

■ 처리결과 원안 가결

■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

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

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의안 처리 절차

의안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議案)’이라고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안에 관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례안, 회의 규칙안, 예산안, 예산 관련 각종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승인안) 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